

의안번호	2201438
의 퇴 인	서영교 의원
회 답 일	2024. 7. 15.
추계번호	24F166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장애인·국가유공자용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장애인·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2025년 1,727억원, 2027년 1,569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4,942억원(연평균 1,64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장애인용 자동차: 2025~2027년간 총 3,935억원(연평균 1,312억원) 감소
 - 국가유공자용 자동차: 2025~2027년간 총 1,007억원(연평균 336억원) 감소

[표 1] 개정안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 및 자동차세, 2025~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7조 제1항)	-1,377	-1,311	-1,248	-3,935	-1,312
- 취득세	-604	-572	-542	-1,718	-573
- 자동차세	-773	-739	-706	-2,217	-739
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29조 제4항)	-350	-335	-321	-1,007	-336
- 취득세	-146	-140	-134	-420	-140
- 자동차세	-204	-196	-187	-587	-196
계	-1,727	-1,646	-1,569	-4,942	-1,647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 제1항 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)	○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2	안 제29조 제4항 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)	○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7조 제1항 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29조 제4항 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 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
- 장애인·국가유공자용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은 2022년 실적을 바탕으로, 향후 감면액이 2018~2022년 조문별·세목별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을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지방세 감면 실적은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의 ‘조문별·항별 감면 현황(15-3-2)’ 자료를 활용
 - 최근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(제17조) 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음
 - '18~'22년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연평균 증감률: -5.2%
 - '18~'22년 장애인용 자동차 자동차세 감면액 연평균 증감률: -4.5%
 - 최근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(제29조 제4항) 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음
 - '18~'22년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연평균 증감률: -4.0%
 - '18~'22년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자동차세 감면액 연평균 증감률: -4.3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7조 제1항)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개요) 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·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

- 대상자: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의 경우 1~4급) 판정을 받은 자
- 대상 차량
 - 승용자동차: 배기량 2000cc 또는 승차정원 7~10명 이하 승용자동차
 - 승합자동차: 승차정원 15명 이하
 - 화물차: 최대적재량 1톤 이하 / 이륜자동차: 배기량 250cc 이하

□ (감면실적)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실적은 2018년 1,944억원에서 2022년 1,596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

- 취득세 감면은 2018~2022년 동안 연평균 5.2% 감소
- 자동차세 감면은 2018~2022년 동안 연평균 4.5% 감소

[표 2]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감면 실적: 2018~2022년

		2018	2019	2020	2021	2022	(단위: 억원) '18~'22 연평균 증감률
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실적	취득세	880	788	818	750	710	-5.2
	자동차세	1,064	1,028	993	943	887	-4.5
	계	1,944	1,816	1,811	1,693	1,596	-4.8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(향후 감면액 전망) 2022년 감면 실적을 바탕으로 취득세는 향후 연평균 5.2% 감소하며, 자동차세는 향후 연평균 4.5%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2027년까지 감면액 전망

- '18~'22년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연평균 증감률: -5.2%
- '18~'22년 장애인용 자동차 자동차세 감면액 연평균 증감률: -4.5%

[표 3]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액 전망: 2022~2027년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
취득세	672	637	604	572	542
자동차세	847	809	773	739	70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장애인용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2025년 1,377억원, 2027년 1,248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3,935억원(연평균 1,31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취득세: 2025~2027년간 총 1,718억원(연평균 573억원) 감소
 - 자동차세: 2025~2027년간 총 2,217억원(연평균 739억원) 감소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 및 자동차세, 2025~2027년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3년 연장(안 제17조 제1항)	-1,377	-1,311	-1,248	-3,935	-1,312
- 취득세	-604	-572	-542	-1,718	-573
- 자동차세	-773	-739	-706	-2,217	-739

나.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29조 제4항)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개요)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·생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하는 특례

- 대상자: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- 대상 차량
 - 승용자동차: 배기량 2000cc 또는 승차정원 7~10명 이하 승용자동차
 - 승합자동차: 승차정원 15명 이하
 - 화물차: 최대적재량 1톤 이하 / 이륜자동차: 배기량 250cc 이하

□ (감면실적)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실적은 2017년 472억원에서 2021년 430억원으로 연평균 2.3% 감소

[표 5]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관련 감면실적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)

		2018	2019	2020	2021	2022	'18~'22 연평균 증감률
국가유공자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실적	취득세	194	186	199	182	164	-4.0
	자동차세	279	269	261	249	233	-4.3
	계	472	455	460	430	398	-4.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(향후 감면액 전망) 2022년 감면 실적을 바탕으로 취득세는 향후 연평균 4.0% 감소하며, 자동차세는 향후 연평균 4.3%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2027년까지 감면액 전망

- '18~'22년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연평균 증감률: -4.0%
- '18~'22년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자동차세 감면액 연평균 증감률: -4.3%

[표 6]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관련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액 전망: 2022~2027년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
취득세	158	152	146	140	134
자동차세	223	214	204	196	187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2025년 350억원, 2027년 321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,007억원(연평균 33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취득세: 2025~2027년간 총 420억원(연평균 140억원) 감소
 - 자동차세: 2025~2027년간 총 587억원(연평균 196억원) 감소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 및 자동차세, 2025~2027년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국가유공자용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29조 제4항)	-350	-335	-321	-1,007	-336
- 취득세	-146	-140	-134	-420	-140
- 자동차세	-204	-196	-187	-587	-196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